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4. 9. 13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7월 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년 9월 13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2004년도 제108회(임시회)
제3차 행정위원회(2004.9.16.)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정진)

- 가. 개정이유
 - 동 기능 전환에 따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자치행정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05년 6월 30일까지 재연장 승인됨에 따라 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-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
 -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자치행정과 존속시한은 “2004년 6월 30일”을 “2005년 6월 30일”로 한다.
- 다. 참고사항
 -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-1425(2004.6.29), 서울시 조직담당관-4393(2004.6.30)호 동 기능 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승인 통보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찬재)

- 한시기구는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별로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여유기구제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,
-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(자치행정과)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1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7. 6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동 기능 전환에 따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자치행정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05년 6월 30일까지 재연장 승인됨에 따라 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자치행정과 존속시한은 “2004년 6월 30일”을 “2005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 :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-1425(2004.6.29)호 및 서울시 조직담당관-4393 (2004.6.30)호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승인 통보와 관련임.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.
- 임법예고 : 생략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48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자치행정과 존속시한은 “2004년 6월 30일”을 “2005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부칙(2000.11.27.) 제1조 생략 제2조(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)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		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(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)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